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일등 공기업



2020년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 평가 결과보고

2020. 12.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인권 영향평가 결과 보고

I 추진 근거

○ 추진배경

-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선도적 역할 요구
- 사회적가치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필요성 증가
- 구성원 인권신장 및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 확립

○ 근거

-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690(2018.10.29.)]
- 「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32조(인권영향평가)
- 공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경영지원실-7109(2020.12.08)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영향평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 점검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II 추진 개념

○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 절차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인권에 부정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공단의 인권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실사)를 위한 핵심 도구

-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로의 기회로 인식

○ 평가대상

- 기관운영(기업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특정사업)

III

추진경과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항목	답변결과	지 적 사 항	개 선 내 용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보완필요	인권정책선언은 회사 내외부 및 이해관계자 들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구성	공단 인권정책선언 및 인권경영 이행 지침 내용 이해관계자 공유 및 인권과 관련한 업무진행시 가능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산업안전 보장	보완필요	감정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보호 환경 강화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련 교육 실시 및 본인 요청시 심리상담치료 지원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아니오	협력회사 및 각종계약 체결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	공단 비즈니스관련자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공단 인권관련 내용 안내 및 인권존중서약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안내

○ 2020년도 인권경영 추진

구 분	추진내용					
2019년 인권영향 평가결과 환류 ↓ 2020년 인권영향 평가지표 변경·추가	2019년 기존 지표(36개)			2020년 변경 지표(54개)		
	NO	체크리스트(지표수)		NO	추가 지표	반영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6)		1	인권영향평가 준거기준 수립	1-4
	2	고용상의 비차별(4)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1-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3	비즈니스 관련자 인권침해 대응	1-6
	4	강제노동의 금지(2)		4	직장내괴롭힘, 갑질, 성희롱 예방	1-7
	5	아동노동의 금지(2)		5	채용관련 불필요 조건 명시금지	2-2
	6	산업안전보장(8)		6	복리후생제도 차별 금지 노력	2-5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		7	정년보장 및 남녀차별금지	2-6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8	여성노동자 부당대우 금지	2-7
	9	환경권 보장(3)		9	만 18세미만 채용가능	2-8
	10	소비자 인권보호(2)		10	초과근무노동자 동의 필수	4-3
				11	사전통지에 따른 퇴직보장	4-4
				12	채용시 신분관련 서류검토 철저	5-3
				13	건강위험요소 외부고지	6-8
				14	즉시 통보가능 연락 체계 구축	9-3
				15	환경훼손이나 오염 최소화	9-4
				16	고객정보 책임자 지정	10-3
				17	고객정보이용 목적 외 사용금지	10-4
				18	사회적 약자 안전조치 마련	10-5

구 분	추진 내용
이행 및 적용 확산	· '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파[경영지원실-1175(2020.02.24.)]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교육[경영지원실-5562(2020.10.05)]
	 · 일 시: 2020. 10. 06(화) 15:00 ~ 16:00 · 장 소: 공단 본부 회의실 · 검토내용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 적정성 -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별 증빙자료 제출 협의 - 향후 인권방향 추진방향 설정 체크리스트 검토 ※ 코로나 19관련, 방역수칙 준수 및 인원 최소화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경영지원실-7109(2020.12.07.)]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경영지원실-7225(2020.12.08.)]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경영지원실-7733(2020.12.31)]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파 및 공유[2021년 1월]

III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2020. 12. 09.(수) ~ 12. 22.(10일간)
- 평가방법: 위원별 서면 체크리스트 작성(코로나 19관련 서면회의 개최)
- 평가내용: 공단 경영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영향도 평가
- 평가기준: 지표별 추진실적의 충족 정도를 평가(정성적)
- 평가절차

평가지표설정 ⇨ 평가자료 검증 ⇨ 인권경영위 제출심의 ⇨ 결과보고

- 평가위원: 총 6명(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4명(본부장 2명, 노동조합대표 2명)
 - 외부위원: 2명(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기준
1	내부위원	문화관광본부장	당연직
2		환경복지본부장	당연직
3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제1노조
4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회계감사	제2노조
5	외부위원	변호사 권오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6		노무법인경북 대표	노무사

○ 평가항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 54개 지표(전년대비 18개 증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구 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0)	권*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고용상의 비차별(9)	권*인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김*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4	강제노동의 금지(4)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5	아동노동의 금지(3)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6	산업안전보장(9)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2)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9	환경권 보장(5)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10	소비자 인권보호(5)	김*환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5개 분야 20개 지표(전년대비 8개 증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휴양시설 (단호휴양팀, 계명산휴양팀)	1	운영 공정성 확보(4)	권*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5)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3	이용 안전보장(4)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5)	김*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김*환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5	지역 환경보호(2)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 주요사업선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공단의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사업장이 상당기간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지역민과 외부인의 이용이 많은 휴양시설임을 감안,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 세부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체크리스트 작성

- (1차) 평가: 평가 지표별 담당위원(인권경영위원)이 실시

- (2차) 평가: 1차 평가를 토대로 전체위원 공유 및 최종평가

※코로나 19 예방에 따른 서면 회의 개최

- 체크리스트 내 지표 문항 별 5단계로 부여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지표별 1 ~ 8등급 부여

- 평가점수: 체크리스트 내 문항 부여점수

구 분		판 단 기 준	조 치 내 용
판단	점수		
예	2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속적 모니터링
보완필요	1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 향후 보완 필요
아니오	0	· 지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전이 없는 경우	· 추진계획 필요
정보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의 실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정보 수집계획 필요
해당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이 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 등급체계: 등급별 백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율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IV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영향평가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0)	9	1			
2	고용상의 비차별(9)	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4				
4	강제노동의 금지(4)	4				
5	아동노동의 금지(3)	3				
6	산업안전보장(9)	8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	2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2		1		
9	환경권 보장(5)	4	1			
10	소비자 인권보호(5)	3	2			
합 계		48	5	1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2.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	3.3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
		6	산업안전보장	94.4	0.6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5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66.6	—
		9	환경권 보장	90	△10
		10	소비자 인권보호	80	△20

▶ 영향평가 결과 92.6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장],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를 강화할 것을 권고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 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건
1	권*인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6)	· 인권침해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관련자 등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매뉴얼 수립이 요구됨.
6	김*술	산업안전 보장 (6-3)	· 공단은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보건상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하나 관련 내역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들이 일부확인됨. 현재 공단 인력 편제 및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8	김*석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3)	· 공단 사업장 중 사업장명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시설명의 서체와 관련해 저작권 등 재산권 침해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와 인식 확산이 필요함.
9	김*술	환경권 보장 (9-3)	· 현재 공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형식적 비상 연락망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즉시 통보 등 실질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등 자원 소모가 커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인 비상연락망 운용대비 태세 훈련 실시로 자체 경보체계 강화가 필요함.
10	김*일	소비자인권 보호 (10-1, 10-3)	· 공단에서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관기간이나 기타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며 기타 개별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부재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됨.

< 기관 인권영향평가 총평 >

- ▶ 공단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권이슈를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지역민을 포괄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선포,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였음.
- ▶ 평가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되 금년도는 자가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좀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함.
- ▶ 공단은 10개 이행원칙 54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예” 및 “보완필요”인 지표개수가 53개로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특히, 작년에 비해 지표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은 인권경영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제도가 공단 전체에 비교적 잘 뿌리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지표 발굴시 공단 인권경영의 사각지대 등 사전 정보제공이 미흡함에 따른 지표 발굴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향후 적극적인 부정적 지표 발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더불어 소비자 인권보호 및 환경권 보장 신설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2. 주요사업 영향평가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운영 공정성 확보(4)	4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5)	3	2			
3	이용 안전보장(4)	3	1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5)	4	1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2)	2				
합 계		16	4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3. 이용안전 보장 87.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평 균 91.5	<table><tr><th>NO</th><th>평가지표</th><th>환산 점수</th><th>지표별 전년대비</th></tr><tr><td colspan="2">평 균</td><td>91.5</td><td></td></tr><tr><td>1</td><td>운영의 공정성 확보</td><td>100</td><td>—</td></tr><tr><td>2</td><td>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td><td>80</td><td>5</td></tr><tr><td>3</td><td>이용안전 보장</td><td>87.5</td><td>△12.5</td></tr><tr><td>4</td><td>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td><td>90</td><td>△10</td></tr><tr><td>5</td><td>지역주민 및 환경보호</td><td>100</td><td>—</td></tr></table>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5	3	이용안전 보장	87.5	△12.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1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5																										
3	이용안전 보장	87.5	△12.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1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 ▶ 영향평가 결과 91.5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약자 이용 편의 보장], [이용안전보장],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건
2	김*석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2-2, 2-4)	· 공단 휴양시설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구, 계단 중 BF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향후 시설 보수 및 개선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김*재	이용안전 보장 (3-1)	· 휴양시설내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긴급구호장비 부재로 인해 계명산휴양림의 경우 긴급상황발생시 환자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4	김*환 김*일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4-1)	· 일부 휴양시설의 경우 휴게시간 혹은 당직근무시 전용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해당 부분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할 것.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평 >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금년 코로나 19와 관련해 대부분의 서비스 시설들이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평소 외부인들의 이용이 많은 휴양시설 2곳(단호휴양팀, 계명산휴양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하였으며 지표수는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으며 자가점검 형식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
- ▶ 공단은 5개 이행 원칙 20개 지표 중, “예” 및 “보완필요” 지표는 20개로 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다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시행 및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니오’로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발굴·반영하여 인권리스크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금년도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체의 사업장 수에 비추어 봤을 때 보다 많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며 구성원들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전체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계획에 근거한 업무추진 등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V

향 후 계 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공유 : 2021년 1월
 - 공단 소식지 및 타 공공기관 전파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협의
 - ▷ 실질적인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평가제도 개선 : 2020년 2월
 - 체크리스트 지속 발굴 및 적용 등
 -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평가 노하우 강화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2021년 2월
 - 금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선임
 - 외부위원 추가 1명 위촉 검토(외부위원 2명 → 3명)

- 붙임 1. 기관운영 영향평가 세부결과
2. 주요사업 영향평가 세부결과

[붙임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평가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2.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보장	94.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66.6
9	환경권 보장	90
10	소비자 인권보호	80

□ 평가 결과표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3	인권정책 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4	인권영향평가의 준거 기준은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의 인권 규범으로 한다.	√					
	5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한다.	√					
	6	공단 임직원의 외부 비즈니스 관련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 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한다.		√				
	7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은 노동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 한다.	√					
	8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9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고하고 있다.	√					
	10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소 계			9	1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노동자의 승진, 전보, 교육에서 남녀를 차별을 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					
	5	공단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복리후생제도상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					
	6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며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7	공단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8	공단은 기능인재추천채용 시 만 18세 미만이라도 채용 연령에 포함한다.	√					
	9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소 계			9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결사 및 단 체 교 섭 의 자 유 보 장	1	공단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2	공단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3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4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 계			4					
4. 강 제 노 동 의 금 지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공단은 불필요한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사용자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다.	√					
	4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통지 후 공단을 퇴사할 수 있다.	√					
소 계			4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거나 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3	공단은 노동자 채용 시 채용서류상 노동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 후 고용하며 신분위조 예방을 위한 증명서 원본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					
소 계			3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 산 업 안 전 보 장	1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2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3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의 경우 도덕상,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				
	4	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5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					
	6	공단은 종업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7	공단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8	공단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위협요소를 파악하여 외부에 고지하고 개선노력을 한다.	✓					
	9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소 계			8	1				
7. 책 임 있 는 공 급 망 관 리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회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2	공단은 협력회사와 공공조달 및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 계			2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 지 역 주 민 의 인 권 보 호	1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고 협의한다.	√					
	2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관련법령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공단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			√			
소 계			2		1			
9. 환 경 권 보 장	1	공단은 재난 및 기타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공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상위 및 유관기관, 외부 용역회사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				
	4	공단은 공단활동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소 계			4	1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1	공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물의 이용정보, 가격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	√					
	3	공단 각 부서마다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4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소 계			3	2				

[붙임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평가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3	이용안전 보장	87.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 보호	9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평가 결과표

분야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	공단은 휴양시설을 이용자의 권리 침해(차별, 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휴양시설은 이용고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					
	3	공단의 휴양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공단 휴양시설은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소 계			4					

분야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1	공단의 휴양시설 각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2	공단 휴양시설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되어 있다		√				
	3	공단 휴양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안내도(안내문, 리플릿 등)가 설치되어 있다	√					
	4	공단 휴양시설은 휠체어 등 편의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				
	5	휴양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소 계			3	2				

분야 3. 이용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이용안전 보장	1	휴양시설은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함 및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				
	2	휴양시설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3	주차장 및 시설 사각지대에 CCTV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4	휴양시설에 소화기, 소화수 등 안전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					
소 계			3	1				

분야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 보호	1	숙직자 및 청소원 등의 휴게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구비 및 지급되어 있다.	√					
	3	노동자들은 법적 근로시간 이외에 무리한 초과 근로를 강요받지 않는다.	√					
	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5	휴양시설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					
소 계			4	1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환경기초시설)

항 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 역 환 경 보 호	1	휴양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					
	2	휴양시설은 운영상의 이유로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는다.	√					
소 계			2					